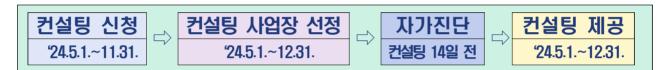
### 외국인근로자 (E-9·H-2) 체류지원을 위한「현장컨설팅」

#### ① 현장컨설팅

○ 외국인근로자(E-9,H-2) 고용사업장 대상, 관계 법령 정보 및 언어 소통· 사업장 내 갈등, 각종 고충 등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

#### ② 컨설팅 개요

- □ 대상 :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(E-9,H-2) 및 고용허가 사업장
- □ 추진일정



- □ **합동 컨설팅** : 고용노동부(지방관서), 인력공단, 안전보건공단, 공인노무사
- □ 컨설팅 상담·신청 :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(지역협력과 외국인팀)

#### ③ 컨설팅 지원내용

고용허가<고용노동부>	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, 숙소, 사업장변경 등 외국인력 체류관리
애로해소<인력공단>	언어소통(통역지원), 직장동료(상사) 갈등, 심리상담, 고충 등 지원 등
산업안전<안전공단>	안전보건수칙, 안전보건관리체계,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
노동법<공인노무사>	임금, 근로시간, 최저임금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노동법 관련

#### ④ 협조 요청

- 현장 컨설팅·자가진단 안내 및 신청서·자가진단표 배포 등
  - 홈페이지 등에 현장 컨설팅·자가진단 안내 및 신청서·자가진단표 게시
  - 지회·회원사에도 현장 컨설팅·자가진단 안내 및 신청서·자가진단표 배포
  - \*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(지역협력과 외국인팀)로 제출하도록 안내
  - 지자체·유관기관으로 제출 된 신청서는 매월 말일에 고용노동부 지방관서(지역협력과 외국인탐)로 송부
- 「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」및 고용허가 대행서비스 신청·이용 사업장 대상으로도 현장 컨설팅·자가진단 안내 및 신청서·자가진단표 게시

#### 붙임 1 현장컨설팅 안내문

#### 〈외국인근로자·사업주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〉

#### 현장컨설팅은 무엇인가요?

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공단, 안전보건공단,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고용하가 · 근로기준 · 산업안전에서부터 언어((통역) · 고충(갈등)해소까지「찾아가는 현장컨설팅」으로 지원해 드립니다.

#### 현장컨설팅 대상은?

□ 고용허가(E-9·H-2)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

#### 현장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지원내용은?

- □외국인 근로자 주거·숙식비·고용변동 등 고용허가제 관련
- □임금, 근로시간, 휴일·휴가, 근로계약, 임금명세서 등 근로기준법 관련
- □ 안전보건수칙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등 산업안전 관련
- □외국인근로자 언어 소통·사업장 내 갈등, 각종 고충 등 애로 해소 관련
- □외국인근로자·사업주 체류안정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

#### 현장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
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현장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

컨설팅 신청 컨설팅 사업장 선정 자가진단 컨설팅 제공 컨설팅 14일 전 **'24.5.1.~11.31. '24.5.1.~12.31. '24.5.1.~12.31.** 



## 〈컨설팅 상담 및 신청-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〉

구분 연락처		구분	연락처	
서울청	02-2004-7328	중부청	032-460-7113	
서울강남지청	02-3468-4916	인천북부지청	032-540-5721	
서울동부지청	02-2142-8453	부천지청	031-999-0918	
서울서부지청	02-2077-6194	의정부지청	031-828-0828	
서울남부지청	02-2639-2372	고양지청	031-920-3952	
서울북부지청	02-950-9864	경기지청	031-290-0881	
서울관악지청	02-3282-9047	성남지청	031-644-3813	
부산청	051-860-1929	안양지청	031-463-0792	
부산동부지청	051-559-6638	안산지청	031-412-6957	
부산북부지청	051-330-9811	평택지청	031-646-1259	
창원지청	055-239-0971	강원지청	033-250-1943	
울산지청	052-228-1917	강릉지청	033-650-1939	
양산지청	055-330-9559	원주지청	033-769-0959	
진주지청	055-760-6743	태백지청	033-550-8602	
통영지청	055-650-1820	영월출장소	033-371-6263	
대구청	053-667-6042	광주청	062-609-8862	
대구서부지청	053-605-6547	전주지청	063-270-9206	
포항지청	054-271-3511	익산지청	063-839-0041	
구미지청	054-440-3305	군산지청	063-450-0601	
영주지청	054-639-1175	목포지청	061-280-0549	
안동지청	054-851-8017	여수지청	061-650-0263	
대전청	042-470-8327	제주특별자치도	064-710-4408	
청주지청	043-229-0750			
천안지청	041-620-7460			
충주지청	043-850-4022			
보령지청	041-930-6288			
서산출장소	041-661-5601			



## 붙임 2 현장컨설팅 신청서

## 고용허가 (E-9·H-2) 사업장「현장컨설팅」신청서

외국인근로자 (E-9·H-2) 주거 등 고용허가 및 임금·산업안전, 언어통역 · 고충(갈등)해소 등 지원

#### ■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

지방관서(외국인업무)·인력공단·안전보건공단·노무사 등이 사업장 현장에
찾아가 관련 법령 및 언어(통역)지원·고충 등 애로 해소, 지원 제도 컨설팅

2	컨설팅	희망	분야를	체크해주세요	[중복	선택	가능]
---	-----	----	-----	--------	-----	----	-----

□ 임금·근로시간·휴일(휴가) 등 외국인력 노무관리에 필요한 노동관계법령 □ 안전보건수칙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,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등 산업안전 관련 □ 언어 소통(지원)·사업장 내 갈등, 각종 고충 등 애로 해소 관련 □ 외국인근로자 주거 등 고용허가제 관련 준수사항 및 지원제도는 필수 지원
<b>3 컨설팅 진행</b> ★ 컨설팅 신청은 '24.11.31.까지 진행
컨설팅 신청 ⇨ 컨설팅 사업장 선정 ⇨ 자가진단 ⇨ 컨설팅 제공
4 컨설팅 시기 (5월~12월) · 담당자 협의 후 일정 확정
5 컨설팅 희망 이유 *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컨설팅에 도움이 됩니다.
6 사업장 개요

▮ 사업체명 : ■ 대표자명 :

■ 업 종: ■ 사업자등록번호 :

▮ 사업장 주소 :

■ 외국인근로자(E-9·H-2) 수 : (명) ■ 국적(외국인) :

■ 연락처 : (핸드폰) (팩스)

E-Mail:

## 붙임 3 자가 진단표

#### 《 2024년 》

# -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-「자가 진단표」

- ☞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필요한 고용허가, 임금 등 노동법,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중점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.
- ☞ 사업장에서는 자가진단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.

## □ 외국인고용법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	진단 방법	진단 결과
1. 고용절	차		
제9조1항 (근로계약)	■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 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?	■ 근로계약서를 서면 <u>으로</u> 작성하였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
	*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는지 확인  ■ 취업교육 이수증을 지참 고 있는지 확인  ■ 목례고용가능 확인서를 있는지 확인  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 기보험을 가입하였는지 확인  ■ 매월 출국만기보험료를 납부 고 있는지 확인  ■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 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  ■ 귀국하는 근로자에 대한 암등 금품을 전액 청산하였는 경를 확인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제11조2항 (취업교육 방해)	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취업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였는지?	■ 취업교육 이수증을 지참하 고 있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	*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	
제12조3항 (특례고용가능	■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방문취업(H-2)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는지?	■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받 았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
확인서 발급)	* 500면 이이 과로 및 고 용제한	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2. 고용관	리		
	■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였 는지?	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만 기보험을 가입하였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제13조1항	* 500만원 이하의 벌금		
(출국만기보험)	■ 출국만기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였는가?	■ 매월 출국만기보험료를 납부하 고 있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조수하고 있다. 아오
	*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제15조1항	■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 용보험에가입하였는지?	■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 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
(귀국비용보험)	*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(근로자)	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	■ 근로관계 종료, 체류기 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	■ 귀국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	□ 준수하고 있음
제16조(귀국에 필요한 조치)	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조치를 하 였는지?	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	*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미만의 벌금		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	진단 방법	진단 결과
제17조1항 (고용변동신고)	■ 근로계약 해지, 외국인근 로자 사망, 5일 이상 무 단결근또는 소재불명, 사 용자 또는 근무처 명칭 변경, 근무장소 변경 등 사유발생시 신고하였는지? *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	■ 근로계약 해지 등 고용변동 신 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고하였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	■ 고용허가 취소 또는 특 례고용가능 확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?	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 능확인을 받았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제19조1항(고 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	* 고용허가 취소	■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취소)		■ 금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 계법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사유 가 있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제19조2항 (근로계약 종료)	■ 고용허가 취소 또는 특례고용가능 취소 후 해당 외국인근로자 계속 고용하고 있는지? *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미만의 벌금	■ 고용허가 취소 또는 특례고 용가능 취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계약관계 를 종료하였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	■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?	■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 자를 고용하였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	* 고용허가 제한	■ 외국인고용법 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 았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제20조1항		■ 고용허가서 발급 또는 근로개 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이직이 있었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(고용제한)		<ul> <li>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 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이 있는지 확인</li> </ul>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		■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 터 외국인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동안 불가피 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 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	진단 방법	진단 결과		
3. 노동자 보호					
제22조 (차별금지)	■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 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고 있지 않은지?	■ 외국인근로자를 이유로 부 당하게 차별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		
제22조2 제1항 (기숙사시설기준	■ 근로기준법 시행령 55조 부터 58조의2에 맞는 기 준을 준수하고 있는지? * 500만원 이하의 벌금	■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 된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, 설치장소, 주거환경, 면적, 사생활 보호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		
제22조2 제2항 (기숙사 사전	■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 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 공하였는지?	■ 근로계약시에 외국인근로자 에게 기숙사 시설정보를 제 공하였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		
정보제공)	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 공하였는지? * <b>외국인근로자 시업장변경</b>	■ 기숙사 시설정보가 변경될 때 변경정보를 외국인근로 자에게 제공하였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		
제23조1항 (보증보험)	■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외 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였는가? * 500만원 이하의 벌금	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		
제23조2항 (상해보험)	■ 외국인근로자는 질병.사 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 험에 가입하였는지? * 500만원 이히의 벌금(근로자)	■ 외국인근로자가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는지 확인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		

## □ 출입국관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

관련 법 조항	진단 사항	진단 방법	진단 결과
출입국관리법 제21조	■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?	■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았는 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
(근무처변경 미허가)	*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	시 확인	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(외	■ 외국인근로자의 여권이나 외 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등의 이행확보를 위해 보관하	<ul><li>외국인근로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지 학인</li></ul>	□준수하고 있음
제33포크3(되 국 인 등 록 증 등 보관금지)	고 있는지? * <b>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</b>	- L 1 - M - 1 - 1 -	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-,	이하의 벌금		
출입국관리법	■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	■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등 록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
제 3 1 조 (외 국 인등록)	등록을 하였는지? * <b>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</b>		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	원 이하의 벌금(근로자)		
│국민건강보험 │법제93조(근	■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켰는지?	■ 외국인근로자가 건강보험 에 가입하였는지 확인	□준수하고 있음
로자의 권익 보호)	*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(근로자)		□준수하고 있 지 않음

산입	<b>법안전</b>
. — –	

□ 귀사의 작업장과 근로환경은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?					
※ 예) 일을 하는 동안 사고(경상, 중상, 사망 등) 또는 급성중독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정도에 따라 판단					
매우 위험하다 외험하다 보통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					
1	2	3	4	(5)	

□ 귀사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은 바로 개선·관리하고 있나요?				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 그렇다
1	2	3	4	(5)

1. 산업안전·보건을 위해 사업주(경영책임자등)가 정하고 있는 명확한 안전방침과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요?				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 그렇다
1	2	3	4	(5)

2. 귀사에서는 안전보건 조직 또는 업무 담당자(안전보건관리담당자, 관리감독자 등)를 정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나요?					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 그렇다	
1)	2	3	4	5	

3. 안전·보건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나요? * 예, 개인보호구 구입, 직원 건강보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설치 등							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 그렇다			
① ② ③ ④ ⑤							

4. 노·사가 함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하고 있나요?				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 그렇다
1	2	3	4	(5)

5.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듣거나, 근로자들이 회사에 건의, 제안을 자유롭게 하고 있나요?				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 그렇다
1)	2	3	4	(5)
	에 작업자들이 모여 점검회의(TBM; To			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 그렇다
1	2	3	4	5
	:전보건에 대한 시 을 충분히 실시하고		전하게 일할 수 있	도록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 그렇다
1	2	3	4	5
	상황을 대비해서 <sup>및</sup> 으로 훈련을 실시히		H뉴얼) 등을 마련 <sup>;</sup>	하고 조치계획에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 그렇다
1	2	3	4	5
	!한 산업재해 또는   않도록 재발방지			<b> 해 다시는 같은</b>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 그렇다
1	2	3	4	5
10.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하고 있나요?				
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매우 그렇다
1	2	3	4	5

## □ 노동관계법

### \* 「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」등 표시 외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

1. 근로조건 서면 명시			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	
근로기준법	■ 근로계약서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 수 하 고 있지 않음	
제17조 (근로조건 명시)	■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.  * ①임금(항목, 계산·지급방법), ②소정근로시간, ③유급휴일, ④연차유급휴가 등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 수 하 고 있지 않음	
기간제법	■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(전자문서 포함) 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 수 하 고 있지 않음	
제17조 (근로조건 서면명시)	■ 기간제・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합니다.  * ①근로계약기간, ②근로시간·휴게, ③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및 지불방법, ④휴일·휴가, ⑤취업장소·종사업무,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(⑥은 단시간근로자 한함)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 수 하 고 있지 않음	
2. 임금명	세서		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	
근로기준법 제48조 (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)	■ 임금지급할 때마다 법정 사항이 모두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  * 근로자 특정정보, 임금지급일, 임금총액, 임금구성항목, 임금계산방법', 임금공제내역  ✓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・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경우 작성(연장·야간·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시간 수 포함)	□ 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	

3. 최저임금 준수			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	
최저임금법 제6조(최저 임금의 효력)	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 * '24년 최저임금액: 시간급 9,860원,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,060,740원(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,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 * '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·숙박비·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 수 하 고 있지 않음	
4. 임금 등	등 각종 금품 지급		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	
근로기준법	■ 근로자가 사망·퇴직시 임금,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	
제36조 (금품 청산)	* 해고, 합의해지, 정년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 해당 *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가능 (연 20% 지연이자 포함)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	
근로기준법 제43조	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  * 다만, 법령·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나, 통화이외 다른 것으로 지급 가능  * 친권자, 법정대리인, 임금채권 양도인 등에게 대신 지급 불가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 수 하 고 있지 않음	
(임금 지급)	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.  * 다만,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한 수당,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 당 등은 예외임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 수 하 고 있지 않음	
근로기준법 제56조 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 5인 미만 미적용	■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%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.  * 연장: 법정근로시간 초과(단시간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초과)  * 야간: 22시 ~ 06시  * 휴일: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%, 8시간 초과시 100% 가산(연장근로가 되어도 휴일가산 수당만 지급)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 수 하 고 있지 않음	
5.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			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	
근로기준법 제50조 (근로시간) 5인 미만 미적용	■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  * 성인: 일 8시간, 주 40시간 이내  * 연소자(18세 미만): 일 7시간, 주 35시간 이내  ※ 13세 이상 근로 가능(13세 미만은 예술공연만 가능)  ※ 13~15세 미만 근로시 취직인허증 필요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 수 하 고 있지 않음	

근로기준법	■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에 해야 합니다. * 단, 임신 중 여성(임부)은 합의해도 연장근로 불가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 수 하 고 있지 않음
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 5인 미만	■ <b>연장 근로는 법정 한도 이내에서만 실시해야 합니다.</b> * 성인: 주 12시간	□준수하고 있음
미적용	* 연소자: 일 1시간, 주 5시간 * 산후 1년 미만 여성(산부): 일 2시간, 주 6시간, 연 150시간	□ 준 수 하 고 있지 않음
6. 휴게시	간 부여	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	■ 휴게시간을 법정 기준 이상 주어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
제54조(휴게)	*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,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(시업시각과 종업시각 도중 부여)	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7. 유급휴	일 부여	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	■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	□준수하고 있음
제55조(휴일)①	휴일(주휴일)을 주어야 합니다.	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근로기준법	<ul><li>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어야 합니다.</li></ul>	□준수하고 있음
제55조(휴일)② 5인 미만 미적용	*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겹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 처리하여야 함	□준수하고 있 지 않음
8. 연차유	급휴가 부여	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
	■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
근로기준법 제60조 (연차유급휴가)	*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, 1년간 80% 미만 출 근 또는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을 부여해야 함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5인 미만 미적용	여러 이 그렇게 되나요 나 사람은 건 그센스 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
-170	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
## 9. 모성 보호
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70조(야간	■ 임·산부, 연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 사전에 근로자 동의*	□준수하고 있음
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(2)	<b>및 고용노동부 장관(관할 지방관서)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.</b> * 특히 임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필요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근로기준법 제74조	■ 임신중인 여성에게 출산전·후 90일(다태아는 120일) 이상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(최초 60일 유급, 다태아의 경우 75	□준수하고 있음
(임산부의 보호)	일 유급)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<u> </u>	* 출산 후 45일(다태아는 60일) 이상 휴가 배정	10 🗆
남녀고 <del>용평등</del> 법 제18조의2	■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
(배우자 출산휴가)	* 정부는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최초 5일분을 지원합니다 (고용센터에 요건 확인 필요)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	■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	
남녀고용평등법	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시 허용해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
제19조 (육아휴직)	* 정부는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(고용센터에 요건 확인 필요)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
## 10. 취업규칙 작성ㆍ신고
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93조 (취업규칙의 작성・신고) 10인 미만 미적용	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 니다. *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ᄀᄀᄀᄌᄖ	■ 취업규칙 작성·변경시 근로자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
근로기준법 제94조 (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) 10인 미만 미적용	* ① 과반수 노조, ②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	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
	* ① 과반수 노조, ②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	□ 준수하고 있지 않음

## 11. 퇴직급여 지급
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
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(퇴직금)	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.  * 이때,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(IRP)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 ✓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행 등에서 개설토록 안내 필요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(확정급여형 급여 지급)	■ [확정급여형]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(IRP)로 지급해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	■ [확정급여형] 급여수준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 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합니다. *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사용 자가 부족 금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(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등	■[확정기여형]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의 부담 금을 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	■[확정기여형] 퇴직 등 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부담금을 모두 가입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
## 12. 직장 내 괴롭힘 예방
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
근로기준법 제76조의2 (직장 내 괴롭힘 금지) 5인 미만 미적용	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	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및 조사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* 하여야 합니다. *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	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 * 피해자에게(요청시)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 등 행위자에게 징계, 근무장소 변경 등(피해자 의견청취)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	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
## 13. 직장 내 성희롱 예방

법 조항	주요 내용	진단 결과
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(직장 내 성희롱 금지)	■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.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(성희롱 예방교육)	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 * 매년 전직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*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·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가능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
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(성희롱 발생 시 조치)	■ <b>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</b> *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, 가해자 조치, 피해자 불이익처분 금지, 비밀누설 금지 등	□준수하고 있음 □ 준수하고 있 지 않음